

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·숙박시설등설치조례안
(의안번호 제67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2. 5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2. 8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3. 2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단란주점, 주점영업,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◎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위락·숙박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(안 제3조)

가. 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

-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
-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
-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
(단, 숙박시설, 단란주점, 주점영업에 한함.)
- 학교주변 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지역
(단,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50미터이내인 지역)
- 해안선에서 200미터이내인 지역(단, 숙박시설에 한함.)
-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

-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부터 200미터이내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
- 나.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자연환경 보전 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·군·구의 조례가 정하는 위락·숙박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
- 또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 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본 조례 제정안이 회부된 것으로
- 상위법 저촉여부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한바 동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락·숙박시설의 허가남발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등 환경보전의 우려가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, 또한 조례안의 전반적인 체계, 형식 및 자구수정 등에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많이 받고 있으므로 건폐율 적용을 20%에서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
- 답 : 건폐율 조정은 법령 규제 사항으로 조례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며, 금후 기회가 있을 때 주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토록 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2001. 3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